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4.

발 의 자 : 정춘생 · 허성무 · 김선민
차규근 · 이수진 · 이주희
서왕진 · 문대림 · 정일영
김동아 · 백선희 · 김준형
신장식 · 이해민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(家事)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가사관리, 보육,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,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1조)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중 “사업장과 가사(家事) 사용인”을 “사업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사관리, 보육,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상 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 다만, 동거하는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<u>사업</u> <u>장과 가사(家事) 사용인에</u> 대하 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제11조(적용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업장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② (현행과 같음)
	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<u>가사관리, 보육, 간병 등 대</u> <u>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서비스</u> <u>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</u> <u>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</u> <u>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</u> <u>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</u>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